

의 안 발 의 서

의 번	안 호	2009 - 56
--------	--------	-----------

수 신 : 거창군의회회장

2009. 12. 1.

제 목 : 조례안 제출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안 1부 끝.

발의자 :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임종귀 의원(인)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강평자 의원(인)

의안번호	제호
의결연월일	2009. 12. . (제 회)

의결사항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안

발의자	임종귀의원외1
발의연월일	2009. 12. 1.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56
----------	-----------

발의연월일	2009. 12. 1.
발 의 자	임종귀 의원 외1인

1. 제정이유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장려”,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연도마다 헌혈장려 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 4조).
-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헌혈권장활동 및 헌혈장려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엄수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혈액관리법」 제4조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 보건소 및 법무통계담당 합의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 활동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

하여 연도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활동계획(이하“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활동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활동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장려 활동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활동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 「거창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장려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업무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 및 헌혈장려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규정은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규

□ 혈액관리법

[시행 2009.1.30] [법률 제9387호, 2009.1.30, 일부개정]

제4조 (헌혈권장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혈액원에 대하여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8.2.29>

③헌혈권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 혈액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9. 3.29] [대통령령 제21284호, 2009. 1.30, 일부개정]

제2조 (헌혈의 권장)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08.2.29>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대한적십자사총재는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